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527587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백미라, 정미희, 김민석

피고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변론 종결2022. 3. 3.

판결 선고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89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5.부터, 237,8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사업부지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부지조성공사 등 단지개발사업과 분양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3. 2. 12. 아산시 E 일원에서 진행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의 우선주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 D, 원고는 2013. 2. 1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SPC)인 피고 C의 출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내용]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F사업
2. 대상토지: 아산시 E, G 일원
3. 대상면적: 525,561㎡ (약 158,982평)
4. 사업기간: 이 사건 주주협약 체결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단, 이 사건 사업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들 협의 하에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분담]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역할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

가. 사업 총괄

나. 인·허가 추진

다. 피고 C 자금 관리 / 운용 및 회계 업무 주관

라. 토지의 수용 및 이주

마. 국고지원금 확보

바. 입주기업유치

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와 원고 간의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체결 업무 주관

2. D

가. 시공업무(단, 피고 C에서 건설자금을 조달할 경우 조달처에서 요구하는 시공능력 및 기타 재무 상태를 충족시켜야 함)

나. 건설사업 관리 지원

3. 원고

가. 피고 C와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나. 기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조

제6조 [협약의 해지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주협약은 각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피고 C의 청산을 완료한 때

나. 당사자들 전원의 합의로 이 사건 주주협약을 종료하기로 한 때

2. 위 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가 이 사건 주주협약을 위반하여 타 당사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민원 및 손해 등이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타 당사자는 각 당사자에게 이 사건 주주협약의 효력 상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타 당사자들에게 소송, 민원 및 손해 등이 발생할 시 소송, 민원 및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기로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 피고 C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정지되거나 피고 C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피고 C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피고 C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유 발생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C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B(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제3자)가 액면가에 매입할 것을 피고 B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 C와 사이에 사업부지 중 아산시 H 임야 24,692m²(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를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I은행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금액 190,000,000원)로,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행은 2015. 1. 5. 원고에게 '피고 B 담보신탁부동산 공매(환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이 여신기본약관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H 토지에 대하여 환가처분을 요청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I은행은 2015. 10. 1. 원고에게 '피고 B 담보신탁부동산 재공매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H 토지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의거 공매절차를 6회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공매절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공매를 요청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5. 피고 B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제목: C SPC 출자주식 매수 및 배당요청

○ 이 사건 주주협약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주주협약 제6조(협약의 해지) 3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우선주 40,000주를 액면가인 5,000원(총액 2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피고 C는 2019. 8. 29. J과 사이에 사업부지 중 H 토지를 포함한 아산시 K리 및 L 일대 48필지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를 위탁자로, J을 수탁자 등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 C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피고 C는 보유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일반사무, 자금관리업무 등 모든 업무를 관련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각 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피고 C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의 대한 신탁계약 및 자금 관리대리사무계약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를 원고에 위탁하기로 한다. 그 수수료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피고 C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신탁 업무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한 자금 입출금에 대한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I은행은 원고에게 기한의 상실을 이유로 담보신탁된 H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 이 사건 주주협약 제6조 제3호가 정한 회생, 파산, 어음 등의 지급정지 등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2015. 10. 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대금을 정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주주협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적극 응하겠다는 회신을 보냄으로써 피고 B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식매매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근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와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신탁계약 등'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가 아닌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C 역시 이 사건 주주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C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정관을 위반하여 J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정관상 의무 불이행 내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 C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227,890,000원 상당의 부동산담보신탁보수와 10,000,000원 상당의 자금관리대리사무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7,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주주협약 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 C가 원고에게 보낸 회신은 주식양도와 관련된 제한 사유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일 뿐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주협약은 원고가 피고 C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도록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허위통정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주주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정관 준수 의무 위반도 피고 C가 부담할 의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협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주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을 갖추는 데만 일조하였을 뿐 제대로 된 업무협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이므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3.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협약에 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 일방의 의사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함으로써 피고 B에게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주협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주주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협약에서 정한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주협약 제6조 제3항은 '이 사건 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 피고 C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정지되거나 피고 C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피고 C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피고 C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등은 모두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악화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한 사유' 역시 위 열거된 사항에 준할 정도로 피고 C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된 사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피고 B이 I은행로부터 대여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I은행이 원고에게 담보신탁된 H 토지에 대하여 공매 및 재공매 신청을 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 후에도 H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는 결국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다가, 2019. 8.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J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 C는 위 H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다른 토지까지 추가로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은행이 H 토지에 대하여 공매 내지 재공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어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설령 I은행이 H 토지에 대하여 공매 내지 재공매신청을 한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피고 C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당사자는 피고 C가 아닌 피고 B인바, 피고 B에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주협약 제3조 제1항 제사호에 피고 B의 역할과 업무 중 하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와 원고 간의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체결 업무 주관'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C가 2019. 8. 29.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주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협약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위 주주협약을 근간으로 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주주협약에 따른 사업기간(2016. 12. 31.까지)이 경과되도록 신탁계약 등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라 하더라도, 피고 B와 피고 C는 별개의 법인이고, 신탁계약 등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되는 것일 뿐 피고 B가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지니는 의미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신탁계약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협조하는 것을 넘어, 양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까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주주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는 이 사건 주주협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설령 이 사건 주주협약에 의해 피고 C의 조직 및 활동의 기본적 근거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가 위 주주협약에 따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 규칙을 정한 자치법의 일종인바, 피고 C의 정관에 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규칙일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피고 C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위탁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 C의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원고가 아닌 J과 사이에 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숙

판사신유리

판사이학영